

『구미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3년 12월 19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3년 12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03년 12월 23일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

나. 제안이유

- 2003. 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2003. 11.26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2003. 11. 4 조례안 심의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중 라목이 신설됨으로 인한 목의 순연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연관된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에서 주민의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며,
- 구미시도시계획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 자연녹지지역내 자동차 운전학원이 많이 영업중에 있으며, 또한 당초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 예고시 민원인의 의견이 있어 반영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나 누락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수정 보완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 조례를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심의시 신설된 목에 관련된 목간 순연의 미조치로 인한 “목” 정정 조치함.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
- 자연녹지지역내의 운전학원 관련 건축물 건축가능 여부에 대한 입법예고시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의 누락 및 기존 운영중인 상황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목 추가삽입. (【별표】 16)

라.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석 광

- 본 조례안은 2003. 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2003. 11.26 구미시도시계획 조례가 공포되었으나, 조례안 심의시(2003.11. 4),
- 도시계획조례 【별표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라”목이 신설됨으로 인한 목의 순연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별표】 16, 【별표】 18, 【별표】 19에서 , 연관된 각 호에 맞게 수정하며,
- 구미시도시계획조례 【별표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기존 자연녹지지역내서 영업중인 자동차 운전학원이 누락되어 입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누락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